

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 
운영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10. 2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64호로 2019년 10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예기치 못한 자연·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, 보험료 납입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보상금액의 산정(안 제5조)
- 라. 피해신고 및 조사, 보험금 지급청구, 보험금 지급 등 (안 제6조~제8조)
- 마. 보상제외(안 제9조)
- 바. 시행규칙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2020년 예산 반영 예정

\*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협의사항

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2) 인권영향평가: 인원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할 사항 없음

4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라. 입법예고(2019. 9. 11. ~ 10. 1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국민생활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

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,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

-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보상금액의 산정, 피해신고 및 조사, 보험금의 지급 청구, 보험금 지급, 보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생활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로,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구로구 등 1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다양화·대형화되고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.  
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 향후,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험 계약 시 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주민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

2.~11. (생략)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